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1.
국토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12월 17일, 이연희의원 등 19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12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2. 18.)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교통법안심사소위(2025. 9. 24.)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폐기)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2025. 9. 25.)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축조심사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국회의원 이연희)

전기차는 친환경적 교통수단으로 최근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난 8월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화재 사고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전기차 배터리(구동축전지)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음.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전기차 사고시 배터리에 대한 정보제공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전기차 제조사는 배터리 정보제공에 대한 의무가 없어 소비자들이 전기차 및 배터리 성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전기차를 구매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차 제작자, 판매자 등으로 하여금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사전에 배터리의 용량, 전격전압 및 최고출력, 배터리 셀의 제조사, 형태 및 주요 원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자동차 이력 관리 정보의 대상에 전기자동차의 경우 구동축전지의 안전과 성능 관련 전주기적 이력관리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여 전기차 구매자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신설 및 제69조의2제1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임종수)

가. 전기자동차 구동축전지 주요 정보 공개

현행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취급설명서, 제작결합안내문 등 그 형식 및 사용 등에 관한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제8조에 따라 신규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자동차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등록증에는 차량의 기본적인 제원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음.

또한 제69조의2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의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및 폐차 등 자동차관련 통합이력(이하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라 함)을 자동차소유자 등 정보 제공을 신청한 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자동차세 체납정보, 차종, 자동차 검사 이력,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음.

한편, 최근 3년간 전기자동차의 화재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기차 화재사고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전기자동차 배터리(구동축전지) 안전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 전기차 화재사고 현황 >

(단위 : 건)

구 분	2021	2022	2023	계
운행중	12	22	34	68
주차중	6	9	21	36
충전중	4	9	13	26
기타	2	3	4	9
합계	24	43	72	139

자료 : 소방청

이렇듯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증폭되는 상황임에도 자동차제조사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영업기밀 등을 이유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개정안은 전기차 구동축전지에 대한 주요 정보를 구매자에게 고지하고 구동축전지의 안전과 성능에 관한 전(全) 주기적 이력관리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며, 재사용된 구동축전지가 장착된 경우 사용이력정보를 추가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소유자 및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전기차의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우선, 구동축전지의 용량, 최고출력 등의 정보 공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구동축전지의 용량, 정격전압 및 최고출력, 구동축전지 셀

의 제조사, 형태 및 주요 원료 등의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으며 2025년 2월 21일 시행예정으로 개정안의 취지가 이미 법령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임.

다음으로, 재사용된 배터리를 차량에 장착하는 경우 해당 배터리의 사용이력정보는 차량의 성능 및 운행안전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전기차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하여 이를 공개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사용이력정보 관리를 위해서는 전기차 배터리의 전(全) 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배터리 이력관리시스템은 2025년 ISP 수립을 거쳐 2027년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며, 재사용 배터리 선별을 위한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또한 2027년에 도입될 예정으로 현재로서는 개정안을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배터리의 이력관리를 위해서는 각 배터리별 식별번호가 부착되어야 하는데 배터리의 식별번호를 부여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법률이 2025년 2월 17일부터 시행되었고, 시행일 이후 제작·조립·수립 되어 신규등록되는 차량부터 배터리 식별번호가 부여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 복기왕)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일부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함.